

물품무상양여합의서

지방자치단체명 : 서울특별시

소속기관명 : 정보통신보안담당관

내 용(품 명)

- 컴퓨터 : 2,813대
- 모니터 : 2,693대
- 노트북 : 148대

일 시

2018년 3월 일

무상양여조건

불용물품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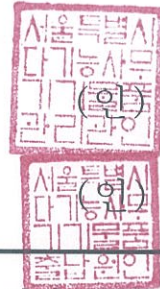
무상양여 근거 사유

- 폐기물관리법 제18조
- 물품관리법 제78조 제1항
-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
-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, 제12조

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.

인계자 : 인계관서의 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
 물품관리관·직 성 명 김 완 집

다기능사무기기물품출납원·직 성 명 권 순 복



지방자치단체명 : 서울특별시

소속기관명 :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(SR센터)

무상양여 받은 후

물품의 분류

불용품(비품)

물품의 용도

폐 기

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.

인수자 : 인수관서의 장 서울시 SR센터 (인)
 물품관리관·직 성 명 (인)

※ 붙임 : 불용물품 목록